

금융감독의 지배·유인구조

2017.6.9.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 우 찬

목 차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범위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제2장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제1절 지배구조 현황

- ① 금융위원회
- ② 증권선물위원회
- ③ 금융감독원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장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유인구조

제1절 유인구조 현황

- ① 인사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인
- ② 감독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유인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범위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금융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은행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6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사태 등을 겪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World Economic Forum (WEF)이 집계한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지수 (Trustworthiness and Confidence)는 2007-08년 32위에서 2016-17년 90위로 크게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재편 (institutional rearrangement)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¹⁾ (i) 통합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쌍봉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ii)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다시 기획재정부로 이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금융산업 정책업무와 금융감독 정책업무의 분리문제), (iii)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금융감독원장직을 겸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금융감독 정책업무와 금융감독 집행업무의 통합문제), (iv)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분리문제), (v) 시스템 위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vi) 부실 금융회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호공사간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vii) 흩어져 있는 여러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조정과 협력을 위해 금융감독기구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예컨대, 금융감독및안정위원회의 설치), (viii) 국제금융업무를 기재부로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의 성패는 금융감독체계 재편 못지않게 개별 금융감독기구 최상층부의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와 감독기구 구성원들의 유인구조 (incentive structure)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의 실패가 주로 감독기구 구성원들의 포획 (regulatory capture)과 이에 따른 규제유예 또는 규제관용 (regulatory forbearance)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 구성원들이 정치권 (관료포함)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사적유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인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독기구 최상층부의 지배구조와 감독기구 구성원들의 유인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²⁾

1) 이에 관해서는 김홍범(2001, 2005, 2007, 2015), 윤석현(2014), 윤석현 외5인(2013), 전성인(2009)을 참조.

본 연구는 여러 금융감독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와 그 구성원의 유인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임기,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2008년 이후 이루어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분리선임이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인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성과평가, 부서이동, 윤리강령과 징계, 퇴직 후 취업제한 등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검사 및 조사업무, 제재, 규제 및 행정지도, 정보공개, 예산 책정 등에 있어서도 유인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금융감독의 지배·유인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관련 법률, 시행령, 규정 등을 살펴보았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 금융감독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지배·유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기존 문헌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전·현직 임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부 기울였으나, 많은 경우 현실과 괴리될 수 있는 법규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객관적인 정량분석보다는 전·현직 임직원 인터뷰 등 정성적인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³⁾ 필자는 본 연구가 금융감독의 지배·유인구조에 관한 첫 연구라는데 만족하고자 하며 추후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⁴⁾

2) Das and Quintyn (2002)은 바람직한 감독기구가 갖추어야 네 가지 핵심요소로 독립성 (independence), 책무성 (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성실성 (integrity)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Quintyn et al. (2007)는 독립성 (independence)을 제도적 독립성, 규제 독립성, 감독 독립성, 예산 독립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고, 책무성 (accountability)을 입법부에 대한 책무성, 행정부에 대한 책무성, 사법부에 대한 책무성, 예산상의 책무성, 투명성,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3)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인배·김일중(2013)을 참조.

4) 금융감독체제의 유인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동걸 외2인(2013) 참조.

제2장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제1절 지배구조 현황

이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이를 지도·감독하는 상위기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금융위원회

① 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업무 이외에도 금융산업정책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⁵⁾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맡고 있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업무를 맡고 있었다.

② 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이외에 당연직인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 전문가와 경제계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금융 전문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경제계 대표는 비상임으로 한다.⁶⁾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⁷⁾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전문성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 「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임명직 위원들의 경우 그 임기가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의 임기가 같은 연도에 종료하지 않는 시차임기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2008년 이후 5명의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이 임명되었지만 그 누구도 3년의 임기를 채운 경우가 없다.⁸⁾

[표 1] 역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재직기간

위원장	성명	재직 기간	부위원장	성명	재직 기간
제1대	전광우	2008.03 - 2009.01	제1대	이창용	2008.03 - 2009.11
제2대	진동수	2009.01 - 2011.01	제2대	권혁세	2009.11 - 2011.03
제3대	김석동	2011.01 - 2013.02	제3대	신제윤	2011.03 - 2011.09
제4대	신제윤	2013.02 - 2015.03	제4대	추경호	2011.09 - 2013.03
제5대	임종룡	2015.03 - 2017.05	제5대	정찬우	2013.03 - 2016.01
			제6대	정은보	2016.01 - 2017.05

④ 의결서의 작성과 공개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사록 공개의 입법 취지는 국민들의 감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i)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ii)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iii)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iv)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다.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이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補)한다.⁹⁾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아래 세 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

8)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윤증현 위원장만이 3년간 재직하였다 (2004.08-2007.08).

9)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이다.

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표 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도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또, 의사록을 작성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그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증선위에 두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동 심의위원회는 (i) 증선위 상임위원, (ii)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iii) 금융위 법률자문관, (iv)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v)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증선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6인, (vi)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선위에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i) 증선위 상임위원, (ii)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iii)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iv)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v)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상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1인).

10)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분장한다.

한편 감리위원회는 (i) 증선위 상임위원, (ii)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iii)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iv)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v)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vi)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화사 1인, (vii)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viii)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인).

자본시장 관련 위법행위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리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안을 심의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제3항).

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다.

①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금융감독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¹¹⁾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한편,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였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을 별도 임명하고 있다.

② 제재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당연직 3명, 민간위원 6명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민간위원은 12명의 pool에서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연직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전담당 국장(대리 출석 가능)이 포함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현재 11명이다 (1명은 공석).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제재심 매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

11) 현재 금융감독원은 수석부원장 1인, 부원장 3인, 부원장보 9인,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요건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표 3]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1. 금융관계기관·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또는 정보기술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한편, 제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의 경우 발언권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없다. 제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융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에 금융위원회 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 재재대상자의 위원 기피신청이 보장되어 있고, 이의신청시 원조치를 심의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심의하고 있다.

심의회는 심의내용에 대해 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심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또,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열람 후 보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속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재 심사 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하고, 중요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는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 위원은 아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표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2호부터 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절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금융위원회

① 금융위원회의 업무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업무 이외에도 금융산업정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충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질적인 업무를 한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경우 자칫 한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업무 중 금융감독정책이 금융산업정책에 예측될 것이라는 점은 2008년 2월 법 개정 당시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¹²⁾ 이는 2008년 2월 당시 정부가 제시한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대형화·검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유예는 결국 2011-12년의 저축은행

12)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은행 설립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정책 상위에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더 이상의 금융감독 실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정책업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이관시키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업무를 맡을 필요가 있다. 즉, 이명박 정부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¹³⁾

② 금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그 구성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회 구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¹⁴⁾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할 수 있는데 먼저,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규제유예 또는 규제관용의 위험이 있다. 9명의 위원 중 6명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자가 제청권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둘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¹⁵⁾ 우선 부위원장, 금융감독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금융 전문가와 경제계대표의 경우 이들의 추천기관 자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어 견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¹⁶⁾ 특히, 금융전문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다.¹⁷⁾ 셋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경제계대표의 경우 금융규제와 감독의 대상인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이 비금융회사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복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부활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충분히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인, 그 외의 교섭단체들이 4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과 연방

13) 이에 관해서는 김흥기(2012)와 윤석헌 외 5인(2013)를 참조.

14) Datla and Revesz(2013)에 따르면 위원회 구조(multi-member structure)는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여러 사람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정보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차임기제를 통해 위원들의 임기만료 시점을 달리할 경우 위원 간에 업무수행 경험이 공유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어도 일시에 모든 위원들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원추천사무) ①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7) 금융전문가 중 1인은 금융위원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이다.

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¹⁸⁾¹⁹⁾²⁰⁾²¹⁾²²⁾ 하지만 이러한 동일정당비율 규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자칫 위원의 공석을 의도적으로 장기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예컨대, 반대정당 소속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유인이 있다.

한편, 국회가 비상임위원을 추천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들이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 이들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 요건에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요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위원장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국회추천을 받은 비상임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상임위원 또는 위원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책질 의보다는 신상털이식의 의혹제기가 주를 이루는 인사청문회가 계속된다면 현재처럼 인사청문회 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²⁴⁾ 한편,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

3년의 짧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잦은 교체, 정권교체 직후 이루어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교체, 사차임기제의 부재 등은 금융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복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부활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임기는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인 4년으로 늘리고, 연임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²⁵⁾ 또, 금융통화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가임기제를 도입하

18)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제2항).

20)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위원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22) 이와 같은 동일정당비율 규제 (partisan balance requirement)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등 미국 금융감독당국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기관의 경우 동일정당 소속위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3) 이와 관련해서는 Datla and Revesz(2013) 참조.

24) 미국 SEC의 경우 5명의 위원 전원이 상원의 제청과 동의를 받아야 하고, FDIC의 경우 3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 대통령이 교체되어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²⁶⁾

하지만 이러한 임기연장과 시차임기제 도입이 의미를 가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위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법의 부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지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금융(감독)위원장을 임기 만료 이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에 소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④ 의결서의 작성과 공개

현재 금융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의사록의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명단, 안건 제목, 안건 보고자, 원안의결 여부만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이는 부분적으로 사전회의를 통해 이견이 상당정도 사전에 조율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위원들의 독립성 결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의사록을 살펴보면 감사 또는 제재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원의 경우 이름을 ○○○으로 익명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로 의사록 공개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과연 운영규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²⁹⁾ [그림 2]는

25)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공직자 중에서 그 임기가 가장 길다.

26) 「한국은행법」 1997.12.31. 부칙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28) 이러한 문제점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9)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회의록)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08.3.28)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사항
5.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6.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
7.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모습은 영국의 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와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Board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이들은 의결서의 내용을 월 단위로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³¹⁾

나.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의 수가 상임위원의 수보다 많아 비상임위원들이 어느 정도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세 명의 비상임위원 후보를 모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도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 자본시장과 기업회계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에 앞서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²⁾ 사실 은행·보험 관련 사안은 곧바로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면서 자본시장과 기업회계 사안에 대해서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할 명분과 실리는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앞서 제안한 바에 따라 다수의 비상임위원으로 채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즉,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극처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되 나머지 증선위 위원들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중 자본시장과 기업회계 분야의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원회가 독립성 요건을 갖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인 만큼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고,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않는 현재의 조직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³⁵⁾ 우선, 옥상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던 시기에도 (i)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

30) <http://www.bankofengland.co.uk/financialstability/Pages/fpc/meetings/default.aspx>

31) <https://www.fca.org.uk/about/fca-board/minutes>

32) 증권선물위원회의 전신은 금융감독원 설립 이전에 있었던 증권감독원 소속의 증권관리위원회이다.

33) 즉, 상법상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4) 상법상 이사회 밑에 다수의 하부위원회가 있듯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증권선물위원회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관장하는 하부위원회, 검사 및 제재를 관장하는 하부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35) 법률 개정(안)에 적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 (ii)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 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정, (ii) 금융회사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iii)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iv)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v)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인력 측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만 받으면 곧바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 안건이 되었다.³⁶⁾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받아도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그 하부조직 소속의 일반직공무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결재가 올라가야 한다. 검사 등 감독집행 현장에서 감독규정의 제·개정 필요성이 인지되어도 신속히 제·개정 작업을 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³⁷⁾ 또, 금융감독원을 단순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전락시켜 임직원들의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능력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규정 개정작업 등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대한 능력이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기회가 없고 오히려 금융 감독의 근간이 되는 업무보다는 변방에 있는 비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 원장을 겸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6)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하고 질문을 받았다.

37)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사무관 책상에 1-2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제3장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유인구조

제1절 유인구조의 현황

가. 인사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인

① 급여와 성과평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지 아니면 정치권 또는 업계에 포섭될지의 여부는 급여의 수준, 성과연동 보수의 유무, 성과평가의 주체와 평가 내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집행간부, 전문심의위원, 감사의 경우 연봉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은 평가대상연도 기본급에 성과급률을 곱한 금액인데 성과급률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성과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급여규정」 제45조, 제46조). 6개 기관 성과등급(S, A~E등급)에 연계된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기관성과평가등급에 연계한 성과급과 평가상여금 지급률

	기준금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임원	(연) 기본급	90%	81%	72%	63%	45%	0%
직원	(월) 급여	200%	180%	160%	140%	100%	0%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채이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간평가를 한다. 이 평가단은 통상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위원 3인과 예·결산 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100점 만점) 및 평가등급(S등급~E등급)을 산출한다.

[표 5] 금융감독원 2016년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전략·경영(30)			주요사업(70)				
	비전·핵심역량	경영 효율	연간변화 대응 정도	검사제재	금융감독	불공정 조사·감리·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협력
지표	정성4	정성5 정량2	정성3	정성5 정량3	정성5 정량2	정성5 정량1	정성5 정량2	정성2 정량1
배점	10	10	10	18	14	8	22	8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 총점별 등급: (95이상) A, (85이상) B, (75이상) C, (60이상) D, (60미만) E

다음은 2011-2015년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장,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의 급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³⁸⁾ 직책에 관계없이 급여가 2013년까지 상승하다가 2014년부터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기관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금융감독원장의 급여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169,969	176,054	181,148	181,148	191,524
급여성 복리후생비	-	960	5,000	4,950	3,020
기타 성과상여금	135,975	157,840	158,449	97,820	97,820
합계	305,944	334,854	344,597	283,918	292,364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표 7] 금융감독원 감사의 급여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135,975	140,843	144,919	144,919	153,219
급여성 복리후생비	4,824	5,521	-	625	1,625
기타 성과상여금	108,780	126,272	126,759	78,256	78,256
합계	249,579	270,700	271,678	223,800	233,100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표 8]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급여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135,975	140,843	144,919	144,919	153,219
급여성 복리후생비	407	3,585	2,903	3,290	1,625
기타 성과상여금	108,780	126,272	126,759	78,256	78,256
합계	245,162	270,700	274,581	226,465	233,100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표 9]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급여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급	105,366	109,139	130,429	130,427	137,900
급여성 복리후생비	2,702	3,172	1,291	1,796	1,648
기타 성과상여금	84,293	97,848	98,225	70,431	70,431
합계	192,361	210,159	229,943	202,654	209,979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직원 및 전문직원의 연봉은 기본급, 직무급, 평가급으로 구성된다 (「급여규정」 제

38) 본 보고서를 집필한 시점이 2017년 5월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도 인건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39조-제43조). 평가급은 기본급에 0.8을 곱한 금액과 동금액에 평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급률은 전년도 근무평가결과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순서로부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각 근무평가등급에의 인원배정은 같은 직위에서의 전체 평정대상직원을 기준으로 S등급은 10%, A등급은 15%, B등급은 50%, C등급은 15%, D등급은 10% 해당인원으로 한다. 한편, 원장은 평가대상연도 중 재직한 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제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평균 보수액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보수액 중에서 기타 성과상여금과 실적 수당의 비중은 2015년의 경우 7.22%에 불과하다.

[표 10] 금융감독원 직원의 평균 보수액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평균 보수액	86,083	88,910	91,779	92,962	95,736
- 기본급(기준봉급)	48,288	49,508	50,745	51,502	52,757
- 기타 성과 상여금	5,918	6,494	6,561	6,571	7,332
- 실적 수당	5,246	5,384	5,711	5,647	5,922
- 고정 수당	25,022	25,744	26,477	27,026	27,557
- 급여성 복리후생비	1,607	1,779	2,284	2,214	2,167
평균근속년수	17.0	17.1	17.1	17.2	17.3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은 집행간부·전문심의위원 및 직원의 경력 및 근무성적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근무평정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 제12조는 근무성적평정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업적능력평가, 조직업무실적평가, 리더십평가(직위부여자에 한한다), 동료평가(팀장 및 팀원에 한한다) 및 검사상시평가(총무국장이 정하는 검사부서·팀 소속직원에게 한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장의 경우 개인업적능력평가 80%, 조직업무실적평가 10%, 리더십평가 10%로 근무성적평정을 산출한다. 팀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산출하되 동료평가를 참고한다. 팀원의 경우 개인업적능력평가 90%, 조직업무실적평가 10%로 근무성적평정을 산출하되 동료평가를 참고한다.

제13조는 각 평정 별로 평정자를 정하고 있다. 개인업적능력평가의 1차평정자는 직상위자이고 2차평정자는 차상위자이다. 조직업무실적 평가는 집행간부등이 실시한다. 다만,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리더십평가의 평정자는 부서장의 경우 소속 부서직원(선임국장의 경우 선임국장 통할부서의 소속 부서장 및 팀장을 포함한다) 전체, 팀장의 경우 소속 팀원 전체로 한다. 동료평가의 경우 팀장은 동일 부서에 속한 팀장 전체가 평정자가 되고 팀원은 동일 팀에 속한 팀원 전체가 평정자가 된다. 끝으로 검사상시평가의 평정자는 해당검사반의 검사반장으로 한다.

한편, 제10조의2는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평정대상직원은 평정결과 통보 후 평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총무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총무국장은 이의신청 대상 평정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의 현저한 결여 등 평가의 부당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사담당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서 이동

「인사관리규정」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복무, 상벌, 임용 및 인사윤리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유인구조 구축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를 갖는 부분이 직원의 부서이동 기준이다. 제82조에 따르면 직원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동일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직관리규정」상 금융회사 검사, 인가.허가.승인 심사, 공시 심사,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렴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자로부터 청렴도 평가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통보된 직원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허가.검사 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문제가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고 통보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허가.검사부서 이외의 부서로 이동 조치한다.

한편, 규정 제86조의2는 업무추진역 발령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역은 업무능력, 태도 또는 청렴도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서 능력향상, 태도 및 청렴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국소속으로 발령된 직원을 의미한다. 업무능력 또는 태도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함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서 업무능력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신을 받은 직원을 의미하고, 청렴도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함은 「청렴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자로부터 청렴도 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통보된 직원을 말한다. 인재개발원 실장은 업무추진역에 대하여 업무능력, 태도 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연구과제를 부과하는 등 연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무국장에게 통보한다. 연수 이수결과 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업무추진역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연수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부서 이동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은 특정 업무종사자들이 다른 업무종사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회계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아 회계업무 종사자들이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39) 현재는 회계사들이 회계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여러 부서에 진출해 있어 이러한 문제가 크게 희석

③ 윤리강령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2003년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⁴⁰⁾ 이 강령은 (i)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ii)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iii) 특혜 등의 배제, (iv)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v) 정치활동 제한, (vi) 인사청탁 금지, (vii)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의무, (viii) 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ix) 금융회사 감사추천 금지, (x) 이권개입 금지, (xi) 알선·청탁 금지, (xii)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xiii)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xiv) 금품 수수 금지, (xv) 공용재산 사적사용·수익 금지, (xvi)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vii) 투명한 회계관리, (xviii) 협찬요구 금지, (xix)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xx) 초과사례금의 반환 및 신고, (xxi) 금전의 대차금지, (xxii) 경조사의 통지 제한, (xxiii) 사적접촉 제한, (xxiv) 형사사건 기소사실 자진신고, (xxv)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xxvi)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xxvii) 징계 등, (xxviii)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 (xxix) 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xxx) 준수여부 점검 등 매우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돋보이는 내용은 제9조의4(금융회사 감사추천 금지)이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은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감사(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대상기관에 전·현직 임직원을 감사로 추천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은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과 ‘기타 금융투자 상품’을 제외한 일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에는 (i)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ii)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금융감독원은 윤리현장도 제정·공표하였다. 윤리현장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신명을 바쳐 주어진 소명을 다한다.
2. 우리는 항상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담당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소명을 엄정하게 수행한다.
5. 우리는 공무수행자로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6.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가 더욱 청렴하고 겸손하게 업무에 임한다.
7. 우리는 금융시장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시장에서 금융윤리가 철저히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우리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자세를 갖춘다.

권예탁증권, (iii) 상장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주권 관련 사채권, (iv) 상장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이 포함되고, '기타 금융투자상품'에는 (i)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ii)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 (iii) 국공채 등 통상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이 포함된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거래한도와 거래 횟수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총액(매입원가 기준으로 매입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도주식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이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50%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 횟수와 관련해서 임직원은 분기별 10회를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체결 기준으로 매수나 매도 중 어느 한 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를 1회로 본다. 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신용공여 등의 차입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다. 임직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임직원의 피부양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자이나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 또는 매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2는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직원은 소관 감독·검사 대상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계획 확정시(인·허가 승인 신청시)부터 검사결과 조치 완료시(인·허가 승인시)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의 대주주,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감독원 출신자 포함)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검사실시계획 확정일(인·허가 승인 신청일)로부터 과거 2주일 이내 또는 검사결과 조치 완료일(인·허가 승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자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는 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행동강령책임자는 감찰실 국장이 되고, 행동강령책임자는 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징계

직원들이 인사상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유인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윤리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금융감독원 인사담당 부원장), 부원장 3인, 인사담당 부원장보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기발령 포함)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시킨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표 11] 인사윤리위원회의 자격요건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부문에서 인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한편, 「인사관리규정」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소명기회, 재심, 제척 및 기피, 징계의양정 등 직원 징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제49조의2, 제49조의3). 이 면책조항에 따르면 징계기준에 해당되어도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 직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국장은 면책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를 감사실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총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면책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인사윤리위원회에 부의한다.

징계는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1조).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를 보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행위자 징계현황”을 2015년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⑤ 퇴직 후 취업

퇴직 후 취업 또한 바람직한 유인구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루어질 경우 퇴직 후 취업을 위해 재직 중에 검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과 임원을 상대로 엄정한 감독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전관인 퇴직자의 로비를 받아 공정한 검사와 조사 그리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퇴직 후 취업이 지나치게 제약 받을 경우 승진지연에 따른 사기 저하와 조직 구성원 노령화에 따른 조직의 역동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자이다(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또,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법 제17조). 또, 이들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⁴¹⁾

아래는 2012-2016년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 결과'와 '취업승인 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심사결과 취업가능으로 확인되거나 취업이 승인된 건수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퇴직 후 취업이 크게 제약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취업승인 심사		
	심사건수	취업가능	취업제한	심사건수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2012	4	4	0	0	0	0
2013	2	2	0	0	0	0
2014	2	1	1	0	0	0
2015	14	13	1	2	2	0
2016	20	19	1	5	3	2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한편, 참여연대는 2006-2014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 임직원 중에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찾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이전까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비해 문제성 취업이 월등히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41) 특별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표 13] 취업제한기관 취업 건수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감독원	3	4	3	3	7	2	0	0	0
금융(감독)위원회	0	0	0	0	1	0	0	0	2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0	1	0	0	1	0	1	0	0
공정거래위원회	1	0	1	0	1	0	2	0	0

※ 출처: 참여연대 각 연도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 각 연도는 전년도 6월부터 해당연도 5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단, 2006년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나. 감독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유인

① 검사·조사와 제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⁴²⁾ 동 규정은 검사대상 기관과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들도 다수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바람직한 유인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제4조는 검사업무의 운영원칙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검사원의 의무로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8조의3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권익보호담당역에 대해 정하고 있다. 즉, 감독원장은 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독원장은 3년의 임기가 부여되는 권익보호담당역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익보호담당역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원장에게 검사중지 건의 또는 시정건의를 할 수 있다. 또, 권익보호담당역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원에

42)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 소명요구, 검사자료 제출요구 등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에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37조는 제재의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 제공, 제재대상자의 심의자료 열람권 보장,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통지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이해를 갖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청구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하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규제, 행정지도, 정보공개

감독규정 제·개정, 행정지도, 법령해석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바람직한 유인구조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6년 1월에 도입한 「금융규제운영규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 규정에 따르면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한편,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금융위원회는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한편 동 규정은 행정지도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규정은 행정지도의 방식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의 여부, 행정지도 관리번호,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⁴³⁾⁴⁴⁾ 또,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⁴⁵⁾

「금융규제운영규정」은 ombudsman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ombudsman을 두도록 하고 있다. ombudsman은 (i)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ii)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iii) 개선 권고·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2015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i)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ii)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iii)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iv) 금융당국의 공문등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해야 한다.⁴⁶⁾ 아래는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 신청 건수와 회신 건수를 연도별로 보여

43) ‘금융행정지도’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i) 감독행정작용, (ii)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한 회신, (iii)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iv) 인가·허가·등록 등의 통보, (v) 분쟁조정 등은 제외된다. 한편,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4)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4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2016.1-2017.5 기간 동안 총 73건의 행정지도를 예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총 34건의 행정지도와 총 23건의 감독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번호, 소속부서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46) 금융위원회에 홈페이지는 법규유권해석 회신 사례 760건과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12건을 보여주

주고 있다.

[표 14]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신청/회신 실적

구분	2010-2014	2015	2016	2017.1.1-5.22	합계
신청 건수	10	114	100	40	264
회신 건수	10	114	99	21	244

-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 ※ 신청인이 자진철회 하였거나, 소관부서 검토 결과 비조치의견서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한 건 등은 신청건수에서 제외
- ※ 2016년 미회신 1건은 사안이 복잡해서 현재 금감원 관련부서, 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과 협의 중
- ※ 2017년 미회신 19건은 현재 검토 진행 중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그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요구자료의 접수는 원칙적으로 CPC(Central Point of Contact)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CPC라 함은 금융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 제출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서는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와 업무보고서로 제출된 자료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자료요구부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자료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에 노력해야 하고,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의 자료작성 기간을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또,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자료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외의 정도도 금융감독원 구성원들의 유인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은 정보공개주관부서, 주관부서의 기능, 공표해야 할 행정정보의 내용,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와 구성,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③ 예산 책정

예산책정의 주체는 기관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예산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경비는 분담금과 출연금으로 총당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분담금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고, 후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을 의미한다(「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한편, 출연금은 정부, 한국은행, 또는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구분된다.

2017년 예산을 살펴보면 3,666억 원의 수입 중 감독분담금이 2,92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79.7%), 나머지는 613억 원의 발행분담금 (16.7%), 100억 원의 한국은행 출연금 (2.7%), 26억 원의 운영외수입 (0.7%) 등으로 총당하고 있다.

[표 15] 2017년도 금융감독원 예산

관	항	금액 (백만원)	비중 (%)
1. 운영수입		363,953	99.28
	한은 출연금	10,000	2.73
	감독 분담금	292,126	79.69
	발행 분담금	61,270	16.71
	기타수입수수료	557	0.15
2. 운영외수입		2,622	0.72
	수입이자	1,209	0.33
	기타	1,413	0.39
	수입 합계	366,575	100.00
1. 일반관리비		306,214	83.53
2. 운영외비용		7,120	1.94
3. 제자산취득비용		8,571	2.34
5. 법인세등		44,679	12.19
	지출 합계	366,575	100.00

감독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먼저 총예산에서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차감하여 감독분담금 총액을 결정한다. 다음, 아래 식에 따라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총액을 산정한다(금융영역은 크게 은행영역, 금융투자영역, 보험영역으로 구분된다).

$$\text{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총액} = \left[0.6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left(\frac{\text{해당영역 투입인력}}{\text{투입인력 합계}} \right) \right] + \left[0.4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left(\frac{\text{해당영역 영업수익}}{\text{영업수익 합계}} \right) \right]$$

다음, 아래 식에 따라 각 금융영역별로 총부채, 영업수익, 또는 보험료 수입 대비 분담금총액의 비중(분담요율)을 산정한다.

$$\text{은행영역의 분담요율} = \frac{\text{은행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은행영역의 총부채 합계}}$$

$$\begin{aligned} \text{금융투자영역의 분담요율(총부채 기준)} &= 0.6 \times \frac{\text{금융투자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금융투자영역의 총부채 합계}} \\ \text{금융투자영역의 분담요율(영업수익 기준)} &= 0.4 \times \frac{\text{금융투자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금융투자영역의 영업수익 합계}} \\ \text{보험영역의 분담요율(총부채 기준)} &= 0.7 \times \frac{\text{보험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보험영역의 총부채 합계}} \\ \text{보험영역의 분담요율(보험료수입 기준)} &= 0.3 \times \frac{\text{보험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보험영역의 보험료수입 합계}} \end{aligned}$$

다음, 아래 식에 따라 검사대상기관별로 감독분담금을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은행영역 검사대상기관의 감독분담금} \\ &= \text{은행영역 분담요율} \times \text{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 &\text{금융투자영역 검사대상기관의 감독분담금} \\ &= (\text{금융투자영역 총부채 기준 분담요율} \times \text{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 &\quad + (\text{금융투자영역 영업수익 기준 분담요율} \times \text{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 &\text{보험영역 검사대상기관의 감독분담금} \\ &= (\text{보험영역 총부채 기준 분담요율} \times \text{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 &\quad + (\text{보험영역 보험료수입 기준 분담요율} \times \text{해당 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 \end{aligned}$$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각 검사대상기관은 감독분담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별로 각각 3월, 5월, 7월,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16]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

	발행가액총액 대비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 포함)	1만분의 1.8
채무증권	
만기 1년 이하	1만분의 5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1만분의 6
만기 2년 초과	1만분의 7
파생결합증권	1만분의 0.5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1만분의 0.5
투자계약증권	1만분의 9

제2절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인사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인

① 급여

급여 수준이 최근 감소하였지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국은행 집행간부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비교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 2015년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에게 지급된 급여는 각각 306.9백만 원, 282.3백만 원, 268.4백만 원, 226.2백만 원으로 금융감독원 원장,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에게 지급된 292.4백만 원, 233.1백만 원, 233.1백만 원, 210.0백만 원보다 크게 높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다만, 성과급 책정의 근거가 되는 기관성과평가가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부 기관이 기관성과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금융산업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감독업무를 엄중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⁴⁷⁾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정책업무를 분리시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되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성과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만약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복귀할 수 없다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⁸⁾

급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 사안은 외부 전문가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금융감독원이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단일 직군을 관리자 직군과 전문가 직군으로 나누고, 전문가 직군에 속한 직원들에게는 다른 직급 및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⁹⁾

② 인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취업제한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사적체문제가 심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정년 퇴직자와 의원면직자의 수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업무 이외에도 금융감독정책업무도 관장하고 있다는 점,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지나치게 낮게 주고자 하는 유인은 없다.

48) 국제금융위기 직후 탄생한 미국의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는 그 재원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로부터 이전 받는데 이전 규모의 상한은 연방준비제도 운영 경비의 일정분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된다. 2018년도의 경우 상한이 663백만불로 정해졌다.

49) 현재는 팀원-팀장-부서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자 직군만 있어서 전문가들이 순환보직하지 않고 동일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할 경우 승진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로서 동일 업무에 계속 종사해도 승급할 수 있는 별도의 직급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의원 면직자의 비중이 줄고, 정년 퇴직자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의원 면직자가 전체 퇴직자 중에서 80.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35.4%까지 낮아졌다.

[표 17] 퇴직자의 정년퇴직·의원면직 비중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퇴직자 (명)	47	70	54	48	54	39
정년 퇴직자 (명)	6	15	9	18	22	21
퇴직자 중 비중 (%)	(12.8)	(21.4)	(16.7)	(37.5)	(40.7)	(34.4)
의원면직자 (명)	38	49	32	17	20	29
퇴직자 중 비중 (%)	(80.9)	(70.0)	(59.3)	(35.4)	(37.0)	(47.5)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의 직원현황을 연도 및 직급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직원이 6년 3개월 동안 16.5% 증가하는 동안 1급은 30.4%, 2급은 49.2%, 그리고 3급은 26.2% 증가하여 상위직급 직원 위주로 직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4급 직원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3급 직원의 수가 가장 많다. 이는 의원 면직자의 비중이 줄고, 정년 퇴직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조직의 노령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⁵¹⁾

[표 18] 연도별·직급별 직원현황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3월말	증가율 ('10-'17.3)
1급	46	48	51	48	55	56	53	60	30.4%
2급	195	202	205	221	226	224	254	291	49.2%
3급	462	475	509	524	543	544	556	583	26.2%
4급	617	605	594	629	628	622	601	562	△8.9%
5급	263	268	273	281	294	300	309	321	22.1%
6급	-	-	5	10	15	20	21	24	-
사무·서무	71	70	71	79	72	78	86	86	21.1%
계	1,654	1,668	1,708	1,792	1,833	1,844	1,880	1,927	16.5%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급 소요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 구성원들의 평균 승급 소요연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만 2010년 8.4년에서 2016년 9.2년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승급 소요연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상위직급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평균 승급 소요연수

50) 보직이 없는 상당수의 1급은 지방자체단체 등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 3급 직원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급 → 1급
2010	7.6	8.4	8.5	3.2
2011	7.7	8.6	8.4	3.3
2012	7.7	8.8	8.3	3.3
2013	7.7	8.9	8.2	3.5
2014	7.7	9.0	8.2	3.8
2015	7.7	9.2	8.3	3.2
2016	7.7	9.2	8.5	2.8

※ 출처: 채이배 의원실 (원출처: 금융감독원)

③ 퇴직 후 취업

2011년 10월 이전에는 2급 이상의 직원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만 퇴직 후의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그 대상이 4급 이상의 직원에게까지 확대되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

하지만 금융감독원 4급은 입사한지 불과 5-6년밖에 되지 않는 선임조사역으로 이들에게까지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⁵²⁾ 이들의 경우 재직 중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2012헌마331).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014.6.26.).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해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화폐발행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업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므로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지 바람직한 입법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확보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 형량했을 때 4급을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또 다른 이유에서 취업심사대상자를 조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의 경우 효과적인 금융 감독을 위해 계속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채용 및 퇴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3, 4급으로 채용된 외부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³⁾

52) 금융감독원의 직위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임원, 부서장인 국·실장(1, 2급), 팀장(2, 3급), 팀원인 선임조사역(4급)과 조사역(5급).

53)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

퇴직 후 취업제한을 완화한다면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취업제한 심사대상을 2011년 이전처럼 2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팀장 (2 또는 3급) 이상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 감독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유인

금융감독원 예산책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한 금융위원회의 기관성가평가 권한과 동일하다. 즉, 외부 기관에 예산승인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승권이 금융산업정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현재의 구조 아래에서는 이론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예산 승인권 남용하여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금융감독집행 업무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정책업무를 분리시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예산책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한편, 분담금 염출이 경지침체기 또는 금융위기에 검사대상 금융회사들에게 상당한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에는 검독과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더 많은 분담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금융감독원이 평상시에 상당한 금액의 잉여금을 비축해 유사시 분담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이 잉여금을 재원에 활용하는 것이다.⁵⁴⁾

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54) 이에 관해서는 김용재(2004)를 참조.

참고문헌

김용재, “금융감독의 이상과 과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금융법연구』 제1권 제2호, 2004, 83-118.

김인배·김일중,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안정성,” 『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2013, 29-69.

김흥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2012, 173-210.

김홍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비판적 검토,” 『금융연구』, 제15권 제0호, 2001, 141-226

김홍범, “한국의 관료조직과 금융감독,”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2005, 195-251

김홍범,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 『금융연구』, 제21권 제0호, 2007, 55-123

김홍범, “위기 이후 금융개혁: 영국, 독일, 호주의 경험과 시사점,” 『금융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52

윤석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연구』 제4권 제1호, 2014, 1-35

윤석현·고동원·빈기범·양채열·원승연·전성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2013, 71-126.

이동걸, 전성인, 김자봉, “금융감독체제의 유인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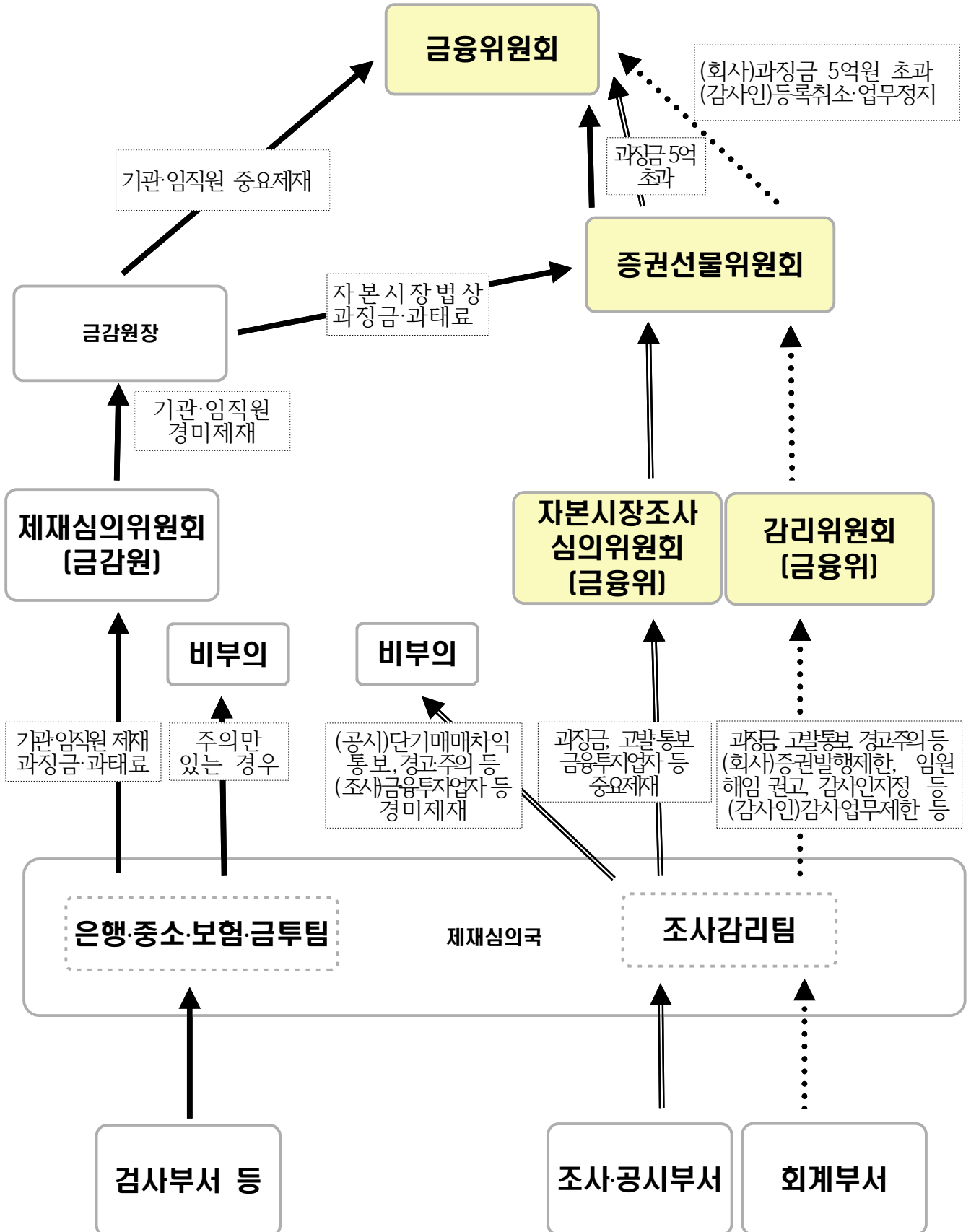
전성인,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방안,” SIRFE Occasional Paper 09-P07

Das, Udaibir and Marc Quintyn, 2002, “Crisis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The Role of Regulatory Governance,” IMF Working Paper No.163

Datla, Kirti, and Richard L. Revesz. "Deconstructing Independent Agencies (and Executive Agencies)." Cornell L. Rev. 98 (2012): 769.

Quintyn, Marc, Silvia Ramirez, and Michael Taylor, 2007, “The Fear of Freedom: Politicians and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upervisors,” IMF Working Paper No.25

[그림 1] 제재 심사 업무 프로세스 [출처: 금융감독원]



[그림 2] 금융위원회 의사록 사례 [출처: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7. 5. 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7년 5월 2일(수) 14:00~14:2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종 룡 위 원 장

김 학 균 위 원

손 병 두 위 원

진 응 섭 위 원

장 병 화 위 원

곽 범 국 위 원

정 순 섭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7년도 제7차 금융위 회의록 및 2017년도 제8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17년도 제7차 금융위 회의록 및 2017년도 제8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18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피씨에이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제119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피씨에이생명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 『○○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1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4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6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7년도 금융위원회 제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